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김원태,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 본청 근무 공무원들이 자치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1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 10년”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